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합병**IAS 27 '별도재무제표'****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AS 27을 적용할 때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과의 합병을 별도재무제표에서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에 대하여 요청서를 받았다.

사실관계

요청서에 기술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a. 지배기업은 IAS 27을 적용하여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IAS 27 문단 10을 적용하여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인식한다.
- b. 종속기업은 사업(IFRS 3 '사업결합'에서 정의함)을 포함한다.
- c.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합병하여 종속기업의 사업이 지배기업의 일부가 된다(합병거래).

요청서에서는 지배기업이 별도재무제표에서 합병거래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를 질문하였다. 특히 이 요청서에서는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라는 맥락에서 합병거래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질문하였다.

- a. IFRS 3에서 정의한 사업결합을 구성하고, 따라서 IFRS 3의 취득법(및 관련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 b. 사업결합으로 회계처리해서는 안 되는지 (이 견해를 적용하면 지배기업은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 장부금액으로 인식한다.)

2. 검토 내용과 결정**조사결과**

해석위원회가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요청서에 기술된 합병거래에 IFRS 3의 취득법(및 관련 요구사항)을 적용할지 판단하는 데에 다양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청서에 기술된 합병거래를 별도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할 때 지배기업은 일반적으로 IFRS 3의 취득법(및 관련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결론

해석위원회는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요청서에 기술된 문제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안건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과제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색인어: 별도재무제표, 합병거래, 지배기업, 종속기업

• Notice

Copyright © IFRS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 Translated, reproduced and distributed by the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with the permission of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of this IASB Agenda Decision has not been approved by the IFRS Foundation and the IFRS Foundation accepts no liability in respect of the quality or content of this translation.

• 알림

Copyright © IFRS Foundation 모든 저작권은 보호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의 동의를 받아 이 저작물을 번역, 재출간, 배포합니다.

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논의 결과 한국어 번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서 승인하지 않았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은 이 번역의 품질이나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